상주시 공고 제2023 - 1015호

「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0일

상 주 시 장

「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의 일부개정으로 종전 운영기준에서 수의매각 대상 범위 일부를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수의매각 대상 범위 전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의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규정 정비 (안 제38조)

나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을 고려할 때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정함 (안 제40조제1항)

다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매각 가능한 시설의 기준을 정함 (안 제40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2023년 7월 31일까지** 상주시장(참조: 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eocm@korea.kr

2) 일반우편: (우37211)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청 회계과

3) 팩　　스: 054-537-6125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회계과(전화: 054-537-728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　　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